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과학산업국 자체감사 —

2022. 1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0건	1	3	6	2	6,177	0	0	0	0
1	공무원 등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필요	1	-	-	-	-	-	-	-	-
2	2021년 바이오코스메틱 생태계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	1	-	1	3,869	-	-	-	-
3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미구성 등	-	1	-	-	-	-	-	-	-
4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	1	-	-	-	-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	-	1	-	-	-	-	-	-
6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보조금 미반납	-	1	-	1	2,308	-	-	-	-
7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1	-	-	-	-	-	-
8	지방보조사업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	1	-	-	-	-	-	-
9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	1	-	-	-	-	-	-
10	보조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	1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공무원 등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필요 (통보)	1
2. 2021년 □□□□ □□□□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시정)	4
3.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미구성 등 (시정)	7
4.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주의)	9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주의)	10
6.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보조금 미반납 (시정)	13
7.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15
8. 지방보조사업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19
9.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3
10. 보조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6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공무원 등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필요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양도받은 권리에 대하여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등¹⁾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지방공무원 등²⁾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승계하는 권리는 해당 공무원 등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것이므로 지급기준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2022. 11. 7. ~ 11. 11.) 동안 국가공무원 등과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3)와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제12조4)를 비교한 결과 조문의 차이는 없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민간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 비교

구분	국가공무원 등	경상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등
민간인과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	민간인 발명자를 제외하고 공무원 등의 지분만큼만 지급 ⁵⁾	민간인 발명자 지분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등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하여 지급 ⁶⁾

3)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 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21-17호) 제11조에서는 직무발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감액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②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 : 각 권리마다 30만 원, 디자인권 : 각 권리마다 20만 원

4) 제12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②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은 30만 원, 디자인권은 20만 원으로 한다.

5) 국유특허권 처분·업무편람 제4장4절 보상금 지급방법 나호

6) 감사대상기간 (2019.1.1.~2022.9.15.) 에 지급된 민간인과 공동으로 발명한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은 총 27건이 지급되었으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적용할 경우 3,425,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민간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경상북도가 승계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민간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이 경상북도가 승계하는 권리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21년 □□□ □□□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BBB과
내 용

BBB과에서는 2021. 2. 17. □□□ □□□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21. 2. 24. (재)SSS로부터 협약일로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요청을 받아 같은 해 2. 25. 위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1. 3. 3. (재)SSS로부터 사업기간을 2021. 2. 25.(협약체결일)로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1차년도 사업비(3억 원) 교부 신청을 받아 같은 해 3. 5. 사업비를 교부하였다.

□□□ □□□ 조성사업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대행사업자는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 3. 30.) V-④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행사업자는 협약 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금액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부서에서는 사업비 지출 용도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한 후 대행 사업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SSS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 수행과 관계없는 1, 2월(25일 이전) 연구원 인건비를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22. 9. 29. 위 부서에서는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 금액을 확정하였다.

[표]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내용	반납액	비고
인건비	합계	3,869,047	
	1월 기본급	1,800,000	1월 해당금액
	1월 연금부담금	141,666	1월 해당금액
	1월 퇴직충당금	141,666	1월 해당금액
	2월 기본급	1,542,857	협약체결 전(2.1~2.24) 2월 해당금액*
	2월 연금부담금	121,429	협약체결 전(2.1~2.24) 2월 해당금액
	2월 퇴직충당금	121,429	협약체결 전(2.1~2.24) 2월 해당금액

* 2월 해당금액 : 2월 기본급(연금부담금, 퇴직충당금)/28×24

그 결과 위탁된 사업 내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된 사업비 3,869,047원이 잘못 정산 확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BBB과장은

잘못 정산된 대행사업비 3,869,047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미구성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2013. 9. 16.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진흥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당연직 2명 포함 총15인 이내로 구성)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대학교수(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대표자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그룹으로 위촉 구성된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데 위 부서에서는 2022. 11. 11.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 2022년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2022년 제1차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 5개년(2022년 ~ 2026년)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심의 없이 관련 계획이 시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조속한 기일 내에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CCC과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관·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대상기간(2019~2021) 중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 총 29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의 사용 용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CCC과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CCC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대구·경북지역 연구지원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지역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 결정일	보조금			주요내용
				합계	도비	자부담	
2019	2019년 □□□□□ □ 지원	WWW	2019.4.22.	27,000	27,000	-	지역의 전략과 대응방안 모색 등

※ CCC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IV-②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신청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해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의 교부신청서”와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IV-③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V-④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결정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 ‘□□□□□□ 지원’은 연도별 연속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도 해당 보조사업은 “2017년도 보조사업 유지필요성(일몰제) 평가계획 통보 및 평가자료 제출”(EEE-5053호, 2017.5.12.) 요청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현황⁷⁾이 평가된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평가결과⁸⁾로 2019년도에 별도의 심의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자기자본 부담액을 포함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면,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게 한 후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WWW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자부담 10,000천 원을 제외한 도비 27,000천 원을 총사업비로 교부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미래전략아카데미사업의 자부담 금액에 대한 집행 관리 및

7) DDD과-3330호(2017.5.30., 2017년도 보조사업 유지필요성(일몰제) 평가 자료 및 결과 제출)의 불임으로 “2017년 □□□□□□ 지원” 사업 2017년도(계획) 집행금액은 도비 27,000천 원, 자부담 10,000천 원임
※ 2018.1.8. DDD과에서 CCC과로 부서명 변경

8)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평가대상사업 및 평가결과
가. EEE-6325호(2017.6.13,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평가계획 알람) 불임2 민간보조사업 일몰제 평가대상사업 목록
- (부서)DDD과, (사업명)□□□□□□지원, (보조단체명)WWW, (2017 예산액) 37백만 원
나. FFF-9642호(2017.9.4.,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평가 결과통보)
: (부서)DDD과, (사업명)□□□□□□지원, (보조단체명)WWW, (등급)보통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CCC과장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보조금 미반납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CCC과에서는 2019년 □□□□□□ 지원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일	보조금			주요내용
			합계	도비	자부담	
2019년 □□□□□□ 지원	MMM	2019.5.1.	65,000	50,000	15,000	- 지속가능한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지역 과학정책개발지원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

※ CCC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V-4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 사업비를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VI-1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 사업비를 감액 집행하는 등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MMM이 아래 [표2]와 같이 자부담 사용내역이 될 수 없는 MMM 지출금액을 자부담으로 편입하여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된 사업비 중 자부담을 감액 집행한 총 집행액 62,000천 원에 대해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2,308천 원에 대해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표2] '2019년 □□□□□□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 내역		정당 집행액	반환 대상액	비 고
	구분	교부결정액 (비율 %)			
합계		65,000	65,000	62,000	
MMM	도비	50,000 (76.9%)	50,000	47,692	2,308
	자부담	15,000 (23.1%)	12,000	14,308	
	기타		3,000		ST 지출금액 ⁹⁾ 을 자부담으로 편입

※ CCC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 비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 해당액 2,308,000원이 반납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CCC과장은

- ①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자부담 사업비를 감액 집행한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부적정하게 정산되어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2,308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9) CCC과 2019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의 도비 지출 내역임
- ST 지출결의서 증제20190821-00002호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FFF과
내 용

FFF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도내 SW저변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주요내용	비고
		합계	도비	자부담		
□□□□□□	SF	300,000	300,000	-	도내 SW저변확산을 위한 초·중고생, 일반인 대상 SW 교육 캠프 운영 등	지출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 FFF과 자료 재구성

1. 지방보조사업 간접비 교부 부적정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제32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III-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IV-③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금 교부 전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사업비로 운영비를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재)SF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의 운영비성 간접비를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를 교부신청하였는데도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신청대로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교부하였다.

[표2] 2019년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계획

(단위 : 천 원)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일	구분별 사업비	항목	비용	비고
합계				300,000	
SF	2019.5.3.	□□□□□□운영위원회 운영	인건비, 진행비	14,500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기자재(교구재), 인건비, 인쇄비	5,650	
		코딩반 육성교육 과정	기자재, 인건비, 진행비, 인쇄비	46,050	
		찾아가는 코딩 교실 교육	기자재, 인건비	52,800	
		□□리틀드래곤 운영	인건비, 진행비, 기자재, 인쇄비	55,200	
		□□하이스타 운영	인건비, 진행비, 기자재	69,800	
		홍보 및 캠페인	홍보비	25,000	
		정산비	회계정산 수수료	1,000	
		간접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	30,000	기관공통 지원경비

※ FFF과 자료 재구성

그 결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성 간접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2. 지방보조사업 출장여비 예산편성 등 관리 부적정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III-①에 따르면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는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2018. 7.)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및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772호, 2016. 5. 26.)에 따르면 지급구분¹⁰⁾ 제1호의 식비는 1일당 25,000원, 숙박비는 1박당 실비를 지급하고 제2호는 1일당 식비는 20,000원,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출장여비 지급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사업종료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식비 등을 제시한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0)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름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재)SF에게 보조사업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식비 82,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액을 정산·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FFF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시고,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예비 집행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FFF과
내 용

FFF과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지원과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신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19년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주요내용
		합계	도비	자부담	
□□□□□□ 사업	(재)SN	165,000	150,000	15,000	블록체인 기반 IoT 특화 교육 및 공모전 등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국내여비 예산편성 등 관리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III-①에 따르면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는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2018. 7.)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며,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및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조례」(경상북도조례 제3772호, 2016. 5. 26.)에 따르면 지급구분¹¹⁾ 제1호의 식비는 1일당 25,000원, 숙박비는 1박당 실비를 지급하고 제2호는 1일당 식비는 20,000원,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출장여비 지급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사업종료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식비와 숙박비 등을 제시한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재)SN에게 보조사업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식비 73,000원을 초과하게 지출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1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름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액을 정산·확정하였다.

2. 국외여행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재)SN이 32,350천 원의 단일 용역사업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Invoice를 근거로 시기를 나누어 1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였는데도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계약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FFF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시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전국체전 방문객들에게 드론 전시 및 체험활동을 통한 도내 드론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2021년 전국체전 드론페스티벌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1] 2021년 □□□□□□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보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계	국비	도비	자부담	
(사)SG	110,000	0	100,000	10,000	- 드론 전시, 드론 체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 1. 1.)」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은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 공고 및 일반입찰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 조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명시하고서도, 보조사업자 (사)SG가 총 61,498,500원의 ‘행사시스템 임차 및 설치 용역’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이용 없이 특정업체(2개 업체)로부터 수기 견적서만 제출 받아 임의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완료 후 해당 행사시스템 임차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서도 시정·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대행사업자를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AAA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풍기인견산업 제품개발, 전시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1]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계	도비	자부담	
2019	□□□□□□ 지원사업	AP	120,000	90,000	30,000	- 영주 풍기인견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브랜드 역량 강화
2020			120,000	90,000	3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5호, 2019. 4. 18.)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0호, 2020. 5. 1.)」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경상북도조례 제3588호, 2015. 1. 1. 및 경상북도조례 제4356호, 2020. 7. 9.)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

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은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임의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

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AP가 2019년 및 2020년 오프라인 콘텐츠·광고물 제작(지하철 와이드 광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단일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나누어 계약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수의계약 안내공고 없이 특정업체로부터 수기 견적서만 제출받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였는데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사업완료 후 해당 오프라인 콘텐츠·광고물 제작(지하철 와이드 광고) 용역을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서도 시정·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계약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AAA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